

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교복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5 월 8 일

여 수 시 장 서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01호

붙임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201호

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”를 “현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”를 “현재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3항) 중 “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교복”을 “교복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교복 등 지원금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며,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한다.

제7조(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

2. 3. (생략)

제7조(환수) -----

-----.

<삭제>

1.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같음)